

# NEWSLETTER 746

Dec 16, 2022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 환급신청 기간 연장에 따른 가산금 지급신청 기간 연장 등 -

관세청은 2022년 12월 14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2023년 1월 3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아래 안내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 I. 개정 사유

####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내용인 환급신청 기한의 연장\*을 반영  
\* 환급신청 기한 2년→5년 연장(§14①)

#### 2. 조문 정비 및 준용규정 명확화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다른 고시를 준용하는 조항에서 준용 조항을 명확화

### II. 주요 개정내용

#### 1. 과다환급금 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 연장 (§15조의3, 별표2의4)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14①)에 따라 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 연장 (2년→5년)
- [별표2의 4] 가산금액 지급신청서 작성요령에도 기간 연장 내용 반영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 (제15조의3) •가산금의 지급신청은 법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가산금액을 징수 또는 자진신고·납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 (제15조의3) •가산금의 지급신청은 법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가산금액을 징수 또는 자진신고·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2. 他 고시 인용조문 명확화 (§67④)

- 선박용품 등의 적재절차에 관하여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준용 규정 구체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적재허가신청서 심사 및 허가서 발급 (제6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 ③ (생략)</li> <li>• ④ 제3항에 따라 선박(항공기)용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관세법」 제143조에 따라 적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물품의 적재절차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장 및 제34조,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장 및 제32조를 준용한다.</li> </ul>	<input type="checkbox"/> 적재허가신청서 심사 및 허가서 발급 (제6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 ③ (현행과 같음)</li> <li>• ④ 제3항에 따라 선박(항공기)용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관세법」 제143조에 따라 적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물품의 적재절차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a href="#">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a>, <a href="#">제12조부터 제14조</a>, <a href="#">제29조부터 제31조</a> 및 제34조,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장 및 제32조를 준용한다.</li> </ul>

## 3. 재검토기한 재설정

- 관세청장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관한 타당성 재검토 기한 재설정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재검토기한 (제10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u>2022년 7월 1일</u>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li> </ul>	<input type="checkbox"/> 재검토기한 (제10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u>2023년 1월 1일</u>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u>12월 31일</u>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li> </ul>

## III. 시행일자

- 2023.01 (예정)

## IV. 의견제출

### 1. 제출처

○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 2. 담당자

○ 임현웅 사무관, 홍정아 행정관

### 3. 제출기한

○ 2023. 01. 03.

### 4. 제출방법

○ (전화) 042-481-7873

○ (전자우편) darius2002@korea.kr, jann@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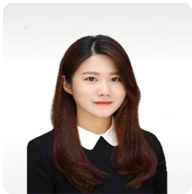
##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붙임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규조문대비표

[붙임 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 | Contact



서경은 관세사

T 02-6011-3033  
E keseo@esein.co.kr



조민지 관세사

T 02-6011-3098  
E mjcho@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